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7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정을호·김준혁·김동아

김문수 · 차지호 · 박정현

전용기 · 홍기원 · 박용갑

강준현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23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이후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그런데 최근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OECD 교육지표 2024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1위지만, 2021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 (1.0%)보다 낮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비교할 때 정부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 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u>	제2조(유효기간) <u>2028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